



UA: 4/18 INDEX: ASA 16/9036/2018 MYANMAR



## 와 론과 초 소 우 WA LONE & KYAW SOE OO

###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 DATE

2018.09.06

#### TO

**미얀마 대통령****Union Attorney General**

U Win Myint

President's Office, Office No. 18 N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95 1 652 624

**Salutation: Your Excellency****미얀마 내무부장관****Minister of Home Affairs**

Lt. Gen. Kyaw Swe

Minister of Home Affairs

Office No. 10, 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95 67 412 439

Email: mohamyanmar@gmail.com

**Salutation: Dear Minister****미얀마 국가자문역****State Counsellor**

Daw Aung San Suu Kyi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e No. 9 N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95 67 412 396

**주한 미얀마 대사****Ambassador of the Embassy of Myanmar in Seoul**

Thura Thet Oo MAUN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8길 12 (04418)

팩스: (02)790-3817

Email: myanmar@kotis.net

Salutation : Dear Ambassador

Salutation : Dear Minister

2018년 10월 18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단원편지를 작성하세요.

2018년 9월 3일,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이는 두 사람이 라킨 주에서 평화적으로 취재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판결이다. 두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즉시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지난 8월 27일 판결이 연기된 이후 2018년 9월 3일, 양곤 북부의 한 법원은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인 와 론과 초 소 우에게 미얀마의 1923년 공직자 비밀엄수법 3(1)(c)항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두 사람은 각각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이전까지의 구금 기간은 형기에 포함된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12일, 와 론과 초 소 우는 미얀마 수도인 양곤 북부에서 이전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경찰관들에게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고, 이들에게 공문서를 전달받은 직후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소수민족인 로힝야를 대상으로 미얀마군의 잔혹한 탄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사하던 중이었다. 라킨 주 북부 사태로 70만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두 사람은 체포된 이후 2주 동안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변호사나 가족들과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이 사건의 증인 역할을 했던 한 경찰관은 상관으로부터 동료들과 함께 와 론과 초 소 우를 '함정에 빠뜨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경찰관은 미얀마 경찰징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형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 1월 이 사건에 대한 사전심리가 시작된 이후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재판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경찰관 증인은 두 사람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수색했으며, 이 휴대폰에서 수집된 정보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문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검은 복면을 씌웠으며, 수 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

#### 영어, 버마어 및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미얀마 정부에 촉구해주세요.

- 와 론과 초 소 우를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두 사람은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한 것만으로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 1923년 공직자 비밀엄수법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거나 임의로,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모든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
-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고, 두 사람이 석방될 때까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인도적인 구금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UA: 4/18 INDEX: ASA 16/9036/2018 MYANMAR



## 와 론과 초 소 우 WA LONE & KYAW SOE OO

###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 DATE

2018.01.10

#### TO

**미얀마 대통령****Union Attorney General**

U Win Myint

President's Office, Office No. 18 N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95 1 652 624

**Salutation: Your Excellency****미얀마 내무부장관****Minister of Home Affairs**

Lt. Gen. Kyaw Swe

Minister of Home Affairs

Office No. 10, 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95 67 412 439

Email: mohamyanmar@gmail.com

**Salutation: Dear Minister****미얀마 국가자문역****State Counsellor**

Daw Aung San Suu Kyi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e No. 9 Nay  
Pyi Taw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ax: +95 67 412 396

**주한 미얀마 대사****Ambassador of the Embassy of Myanmar in Seoul**

Thura Thet Oo MAUN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8길 12 (04418)

팩스: (02)790-3817

Email: myanmar@kotis.net

Salutation : Dear Ambassador

2018년 10월 18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 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체포될 당시 라킨 주 북부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미얀마 정부군의 폭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특히 2017년 9월 초, 인 단, 마웅다우 마을에서 군인과 경찰, 지역 자경단에 의해 로힝야 남성 10명이 처형된 사건의 조사에 주력했다. 2018년 1월 10일, 와 론과 초 소 우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선된 날, 미얀마군은 해당 사건에 군 소속 병사들이 관여했으며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18년 4월 10일, 군은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병사 7명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군에서 제적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얀마 보안군이 라킨 주 북부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얀마에서는 기자 및 언론인들이 지금도 취재활동과 관련해 제한을 받는 등 언론자유 입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독립적인 언론매체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대우 및 상황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보도하는 사람은 위협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에 놓인다. 체포, 구금, 기소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에는 “국경과 상관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모든 제한은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고, 국제인권법상 명백히 특정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1923년 공직자 비밀엄수법은 그 범위가 극히 넓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법상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게다가 공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편지에서

Dear \_\_\_\_\_,

I am writing to express my grave concern regarding 7 years imprisonment which was sentenced to Wa Lone and Kyaw Soe Oo, two Reuters journalists because of their legitimate journalistic work, investigating a military crackdown in Rakhine State, Myanmar. States have a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can only be restricted in very specific circumstances.

Therefore, I urge you to release Wa Lone and Kyaw Soe Oo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s they have been imprisoned solely for the peaceful exercise of their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voke the convictions against them. I also call on you to repeal or amend all laws ? including the 1923 Official Secrets Act ? which criminalize or impose arbitrary or sweeping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bring Myanmar legislation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In addition, ensure protection from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nd ensure humane conditions of detention pending their release, including medical care.

Yours sincerely